

재산심의회운영세칙

여수시도시공사 제정 2008.10.7. 세칙 제5호

제정 2017.11.17. 세칙 제6호

일괄개정 2024.5.7. 세칙 제38호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재산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단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재산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여수시도시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교환가격의 사정
 2. 대부료 사정
 3. 재산의 교환 및 기부, 수증의 적정여부
 4.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감정가액의 사정.
- 다만, 보상가 사정은 제외한다.

제3조(조직) 심의회의 구성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 인사위원회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을 임시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순으로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소집 및 의결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심의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심의) ① 심의요구 부서에서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토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서면심의 등) ①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서면심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의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재산가액 또는 대부료, 임대료 등이 5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는 **담당부장**이 되고,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24. 5. 7.>

제9조(회의록 작성)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

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전 여수시도시공사 재산심의회운영세칙으로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38호, 2024. 5. 7.>

이 세칙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